

민간조사업의 주무관청 설정 방향 Set the Direc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ung Gu Jo*, Ju Sang Park, Dong Je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woon University, 730 Gangdong-ro,
Sandong-myeon, Gumi,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omestic private sector against the direction of the competent explores Agency was set,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in the current interim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have more than 50% ar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local police in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game closely related with the police officers and 57 patients have recently developed a program utilizing Nvivo8 was analyzed. Studies in the future to be introduced at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etting direction competent authorities and private police agencies were needed to be set. security and Other Protective Services and the police to be the association 32(65.3 %), the police and the cooperation 14(28.5%), police work, and the similarity 3(7.1%), respectively. private agencies to be entrusted to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24(64.8 %), privatization, 8(21.6 %), lack of police force five(13.5%) were categorized.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competent authority when the domestic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o be in Police security and Other Protective Services and the relevance of the existing private sector is because the size was, on the other hand, private sector agencies to be entrus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a professional private professional organizations to the conclusion that because of the size and efficiency are derived.

Key words: private investigation, institution introduc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police agency, private specialty organ

* Corresponding author. Tel. +82-54-479-1358. Fax. +82-54-479-1359 E-mail. skcho@ikw.ac.kr

*** Tel. +82-54-479-1351. E-mail. djkim@ikw.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an. 5, 2014 / Revised: Jan. 21, 2014 / Accepted: Feb. 17, 2014

국문초록

이 연구는 국내의 민간조사의 주무관청의 설정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잠정적으로 민간조사업체 5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민간조사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 57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개발된 Nvivo 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앞으로 민간조사업이 도입되면 주무관청은 경찰청과 민간전문기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중 경찰청이 되어야 하는 것은 경비업과의 연관성 32(65.3%), 경찰과 협력성 14(28.5%), 경찰업무와 유사성 3(7.1%)로 나타났으며, 민간전문기관에 위탁되어야 하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 24(64.8%), 민영화 8(21.6%), 경찰인력부족 5(13.5%) 으로 범주화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국내 민간조사업의 주무관청을 경찰청이 되어야 하는 것은 기존의 민간경비업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인 것이고, 한편 민간전문기관을 주무관청으로 하여야하는 것은 민간전문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기 때문인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민간조사, 제도도입, 주무관청, 경찰청, 민간전문기관

I. 서론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하에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1].

국내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0조에서는 탐정, 정보원 등 민간조사원을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인의 소재 파악 및 사생활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유사민간조사업체들이 공공연하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1996년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 가입 후 외국의 민간조사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온 바 있으며[2],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1999년부터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해오고 있고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서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어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의 침해를 방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3].

현재 국내의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피해규모가 알려진 바 있으며, 이러한 국민피해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행, 도청 그리고 청부살인 등이며 사례비로 최대 수억 원을 받고 있다. 또 의뢰인에게 허위정보를 알려주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불법행위인 것을 빌미로 삼아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게 되는 주무관청 선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조사업의 수요와 주무관청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는 바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민간조사의 의의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영역에서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범죄 및 사고 등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Jung(2008)은 개인이나 업체가 사적인 신분으로 타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5]. 한편 Jang & Song(2008)은 민간조사업은 조사주체는 민간인이고 조사대상은 다른 민간인의 사람이며 조사동기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조사방법으로는 면접, 미행, 잠복 등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조사결과는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6].

또한 Kim(2011)은 민간조사는 광의적 의미에서 민간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사적 또는 사회적 조사 및 정보수집 행위로서 의뢰 또는 의뢰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협의적 의미에서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타인의 의뢰와 수수료를 받고 그 사람의 권리 보호 및 회복에 필요한 조사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업무로서 개별법에서 특히 금지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민간조사는 공권력의 한계에 따른 공백을 민간영역에서 계약에 의해 보수를 받고 의뢰인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민간조사업체의 현황

1) 국내의 민간조사업체

국내에 민간조사와 관련된 업체의 관리가 제도권 외의 불법행위로 분류되어 정확한 통계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나 흥신소, 심부름센터, 민간경비업체 등에서까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2].

Jung(2008)에 의하면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파란닷컴, 렛츠114를 통해 확인한 국내 심부름센터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흥신소를 포함한 심부름센터는 전국에 2,650개 정도로 추정되며 지역별로는 서울에 550여개, 경기도에 580여개 정도가 영업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별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5].

이렇게 많은 민간조사업체의 불법행위가 난립하는 것은 범죄와 사건사고로 많은 시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범죄의 특수한 성격, 범죄의 전문화와 다양화 및 수사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8].

2) 외국 민간조사업체

Jo(2012)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민간조사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핑커톤(Pinkerton)은 2000

년 초 경영상의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였고 2003년 스웨덴 시큐리티업체인 시큐리타스 (Securitas)로 합병되었다. 또한 크롤(Kroll)은 서울시 광화문 소재에 2005-2009년까지 지사를 내고 영업을 하였으나 이 역시 경영상의 문제로 현재는 철수한 상태이다. 앞서 설명된 민간조사 업체 중 현존하는 외국계 민간조사업체는 힐앤어소시에이츠(H&A)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업체는 200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외국계 다국적 리스크 컨설팅업체는 국내에서 큰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민간조사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합법적인 민간조사 시장이 구축된다면 외국계 리스크 컨설팅업체가 국내 민간조사시장을 선점하여 함께 향후 우리민간조사시장의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국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전 국내 민간조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술연구와 시장조사와 같은 대책 마련은 절실하다고 하겠다[2].

3. 민간조사업 법안

현재 국내 경비업체의 불법적 민간조사업무와 외국의 민간조사업체의 불법행위 그리고 흥신소와 같은 심부름센터에 의한 국민의 피해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있다. 또한 지금 국민의 치안의식은 날로 높아져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겠다는 의식은 차츰 높아지고 있으며[9], 1999년부터 민간조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다음 <표 1>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민간조사관련 법안들이다.

<Table 1> National Assembly Private Investigation on Proposed Legislation

단 계	업 무 범 위	주무관청
1999년 한나라당 하순봉의원안	1. 범죄 조사 및 위법, 부당행위의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3.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그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소재 5.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6.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경찰청장
2005년 한나라당 이상배의원안	1.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3.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5. 소재가 불명한 친족의 소재파악 등과 관련된 조사 6.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7. 개인에 관한 정보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경찰청장

<Table 1> National Assembly Private Investigation on Proposed Legislation(Continue)

단 계	업 무 범 위	주무관청
2006년 열린우리당 최재천의원안	1. 사이버 범죄, 보험범죄, 지적 재산권 침해, 기업회계 부정 등 각종 범죄 및 위법행위의 조사 2. 사람의 사망·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훼손 등 각종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3. 분실·도난·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 4. 행방불명자,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의 도피자범 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탐지 5.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자료의 확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법무부 장관
2008년 한나라당 이인기의원안	1.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한 가족의 의뢰에 의한 소재파악 2. 소재가 불명확한 물건의 소재파악 3.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	경찰청장
2009년 한나라당 강성천의원안	1. 미아가출인·실종자·소개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 2. 도난·분실·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3.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법무부 장관
2013년 새누리당 윤재욱의원안	1. 가족의 의뢰에 의하여 실종아동·가출인·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 2. 도난, 분실, 소재가 불명확한 물건의 소재확인과 관련된 조사 3.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	경찰청장
2013년 새누리당 송영근의원안	1.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2.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3.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4.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법무부장관

※ Source: [9] 재구성.

4. 선행연구

민간조사를 주제로 한 연구의 선행연구를 범주화해 보면 (1)업무범위 (2)관리감독 기관 (3)교육 훈련 방향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 <Table 2>에서는 지금까지 민간조사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2> Previous Studies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

범주	연구자	주요내용
업무 범위	김상균(2007)	미국, 일본 등 외국 민간조사원의 업무내용의 범위와 업무범위 설정에 따른 법률과의 관계 검토하는데 중점 두어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제도 모델에 대한 논의[10].
	안영규(2010)	민간조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업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11].
	이주락·최종윤 (2012)	민간조사원 조사권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12].
	최종윤·이주락·황세웅(2012)	우리나라의 입법안과 외국 사례의 비교·분석 및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민간조사제도의 합리적인 업무범위를 제안[13].
관리 감독	전대양(2006)	국회 발의 안을 분석하고 감독기관은 경찰청장이 하되 민간조사원의 관리문제는 업계의 자율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조사협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8].
	김원중(2007)	국가치안을 경찰 뿐 아니라 민간조사는 국가 수사력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국가 수사기관과 민간조사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14].
	정일석·박준석·오세광(2008)	민간조사업의 관리 감독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여 경찰청 소속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15].
	정일석·박지영 (2009)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으로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기관으로 경찰청 산하 독립적 기구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16].
교육 훈련	이상원·박윤규 (2007)	민간조사원 교육이 현재의 민간경비원의 신입교육과 보수교육과 같이 현장인력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17].
	장석현·송병호 (2008)	민간조사원 교육훈련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6].
	유재두(2007)	민간조사원의 자격 조건에 대하여 논의 민간조사원의 교육으로는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공자들에게도 일정한 시험과목의 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18].
	조성구·이주락 (2011)	대학에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고 민간조사학과 졸업생의 취업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논의과정을 통하여 민간조사학과 개설을 주장[1].
	이주락·조성구 (2011)	경찰관들에게 민간조사의 필요성 증대 원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들이 퇴직 후 민간조사원으로 재취업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탐색[19].

※ Source: [4].

III. 연구방법

1.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s)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부름센터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키고자 하였을 때 그 주무관청을 설정에 대하여 가늠해보기 위하여 심부름센터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대상

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무관청 설정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근거한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s)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민간조사업체의 주무관청 방향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질적 연구의 표집방법으로는 ① 내부자적 관점의 포착(내부자의 시각을 기술하고 이해), ② 특정 사례연구(연구자의 관심을 두고 있는 특정한 사례나 사건현상 연구), ③ 목적표집(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음), ④ 현장작업(직접 현장에 들어가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하며 자료 수집), ⑤ 장기간 관찰(연구현장 속에서 연구자들과 오랫동안 생활하거나 대화)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2]. 이 연구에서는 목적 표집방법을 선택 하였다. 목적 표집은 연구자가 관심을 둔 특별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연구대상으로 삼는 표집 것이다[2].

이 연구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을 표집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정일석(2008)의 연구에서 민간조사업체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국에 2,650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에 550여개, 경기도에 580여개 정도가 존재하여 수도권에 1,130여개로 수도권 지역에만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5].

최초 이 연구에서 민간조사업체의 종사자와 경찰공무원 그리고 법무부 공무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려 하였으나 민간조사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연구기간의 한정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총 57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3> 과 같이 구성되었다.

<Table 3> Status of the Study Participants

구분	미아찾기 특별반	여성 청소년계	생활 질서계	교통사고 조사계	수사 경찰관
인원	13	11	12	10	11
연령	31-55	33-44	30-48	38-39	30-53
경력	5-17	5-14	5-12	5-13	5-19
학력	학사- 학사	학사- 석사	고졸- 학사	학사- 학사	고졸- 학사
계급	경장- 경감	경장- 경위	경장- 경감	경사- 경감	경장- 경감
남/여	12/1	6/5	9/3	10/0	11/0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약 40세 이었으며, 평균 근무경력은 10년 정도로 어느 정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급은 경장부터 경감까지로 실무자 선이었으며, 학력은 평균 학사이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이 48명(84.2%)로 여성이 9명(15.7%)에 비해 높게 구성되었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질적 연구에서 연구 설계방법에 대한 합의된 구조는 없다. 그 만큼 질적 연구는 일정한 형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자들은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며 드러나는 이슈들을 지적함으로써 질적 연구자가 질적 연구 수행방법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20].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설계방법 중 근거이론의 방법으로 심층면담 기법 중 반구조화된 심층면담(Semi 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고, 근거이론에 기반을 두고 호주에서 개발된 QSR NVivo 8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부터 주무관청 설정의 개념 6개가 도출되었다. 다음 <Table 4>는 이런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항목들을 분류한 최종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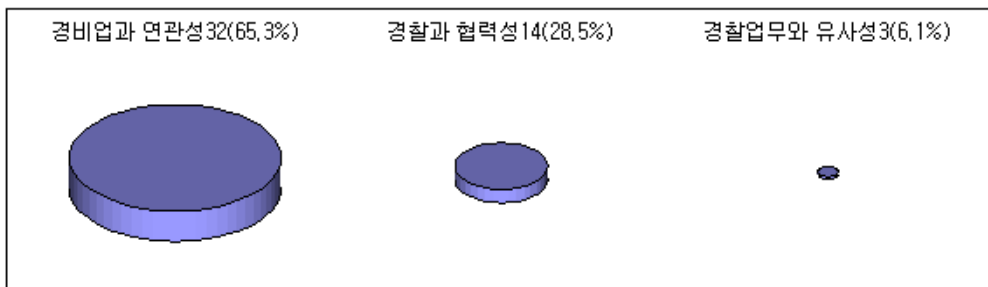
<Table 4> This Factor by the Challenges of the Security Agencies Can Often Coded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코딩수	빈도(%)
주무관청 방향	경찰청	3	49	56.9%
	민간전문기관	3	37	43.0%

1. 경찰청

다음 <Table 5>은 민간조사의 주무관청이 경찰청이 되어야 한다고 코딩된 노드의 빈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5> Police Designated



민간조사업체의 주무관청으로 경찰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경비업과의 연관성 32(65.3%), 경찰과 협력성 14(28.5%), 경찰업무와 유사성 3(7.1%)로 범주화되었다. 다음은 민간조사업체의

주무관청으로 경찰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경비업과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고 아래 제시된 하위노드는 연구 참여자의 전체 의견중 잘 표현된 하위노드이다.

- 경비업법처럼 경찰청이 주무관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경찰에서 경비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민간조사업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경비업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러한 상호연관성을 따져 볼 때 경찰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C-78).

- 저는 민간조사업도 경비업의 한 분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경찰청이 주무관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사업으로서 통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M-32).

민간조사의 주무관청으로 경찰청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의견 중 민간경비업과 연관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조사업은 민간경비업과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업의 주무관청을 경찰청으로하여 민간경비업과 주무관청을 같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경찰과의 협력성에 관한 것이다.

- 치안수요가 증가함에도 경찰력이 적절히 대응치 못하여 민간의 참여와 조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치안능력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경찰활동의 주무부서인 경찰청에서 사적경찰활동의 민간조사업무를 감독하는 주무관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협력도 잘되고요(H-99).

- 일단 경찰은 국민과의 접촉이 용이하고 음성적으로 민간조사로 인한 범죄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죠 그리고 전문적 정보, 수사, 조사요원에 의한 주체로 관리감독이 용이하겠죠(J-16).

민간조사업이 경찰과 높은 협력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경찰업무가 정보, 수사, 민생치안과 같은 업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민간조사업의 주무관청이 경찰청으로 설정되어야 민간조사와의 협력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다음은 민간조사업의 경찰업무와 유사성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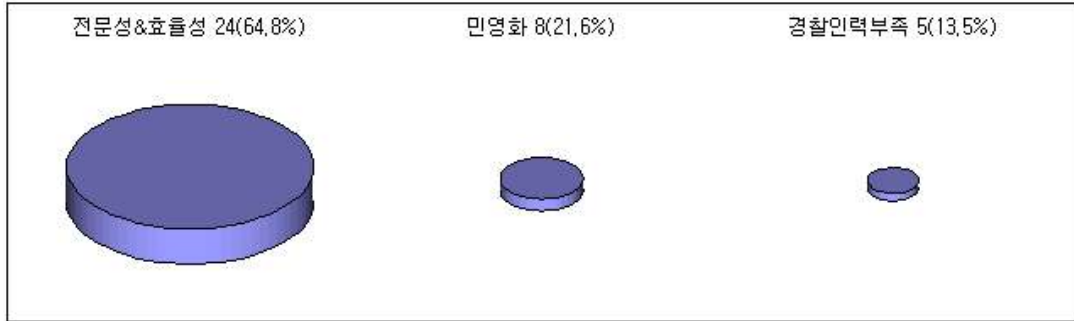
- 경찰청이 주무관청이 되어야 해요. 민간조사업무 자체가 전문적인 것으로 경찰업무와 유사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상세하게 단속지도하게 위해서는 경찰청이 주무관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X-22).

민간조사업이 경찰업무와의 유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조사업무가 경찰업무와 일정부분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의 주무관청이 경찰청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 민간전문기관

다음 <Table 6>은 민간조사의 주무관청이 전문기관에 위탁이 되어야 한다고 코딩된 노드의 빈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6> Private Professional Organizations



민간조사업체의 주무관청으로 전문기관에 위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전문성과 효율성 24(64.8%), 민영화 8(21.6%), 경찰인력부족 5(13.5%)로 범주화되었다. 다음은 민간조사업체의 주무관청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에 관한 것이고 아래 제시된 하위노드는 연구 참여자의 전체 의견중 대표적인 하위노드이다.

- 전문가 그룹에서 구체적이고 효율성을 토대로 하여 주무관청을 정하여야 한다고 봐요 그 예로 경찰이 운전면허 관련하여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이양하였듯이 민간조사업체의 관리 감독 관청의 설립과 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찾아서 새로운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E-4).

민간조사가 도입될 시 민간조사업체의 주무관청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전문성과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는 예로 운전면허증 발급이 대표적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민영화 정책에 관한 것이다.

-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모두 민영화 되어야 해요. 지금도 기획재정부에서 세금부과는 국가 행위지만 체납징수행위는 일반 행위로 보고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징수법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듯이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은 각 업무 마다 아웃소싱 하여 전문기관에서 감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V-50).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민간조사의 주무관청 또한 민간에 위임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그 예로 기획재정부의 체납징수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경찰인력의 부족에 관한 것이다.

- 민간조사업체의 관리감독은 업무를 세분화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감독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요. 민간조사업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전문적으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는 경찰이 감당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봐요(S-94).

경찰인력의 부족은 민간조사업이 앞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업무가 세분화되고 규모가 커지는데 부족한 경찰인력으로는 방대해진 민간조사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없어 새로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민간조사는 국민의 치안의식 증대와 다양한 치안서비스의 수요확대에 따른 국가 치안서비스의 한계로 민간조사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정증언 및 증거, 미아·가출인·실종자 파악, 경제범죄 그리고 경찰의 미제사건 등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9개의 법안이 입법화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민간조사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유사 민간조사업체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난립으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민간조사업체의 주무관청이 될 수 있는 경찰청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조사업의 주무관청 설정의 방향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은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미래의 민간조사업의 주무관청에 설정에 관하여 몇 가지 논의 점을 시사하고 있다.

Jeon(2006)은 앞으로 민간조사업의 입법화가 이루어진다면 주무관청 설정에 관하여 국회 발의된 법안을 분석하여 감독기관은 경찰청장이 하되 민간조사원의 관리문제는 업계의 자율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조사협회와 같은 민간에서 맡아야 한다고 하였다[8].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체의 주무관청은 경찰청과 민간전문기관 둘 중 하나가 맡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중 경찰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경비업과의 연관성 32(65.3%), 경찰과 협력성 14(28.5%), 경찰업무와 유사성 3(7.1%)로 범주화 되었으며, 반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전문성과 효율성 24(64.8%), 민영화 8(21.6%), 경찰인력부족 5(13.5%)로 범주화 되었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민간조사의 주무관청으로 경찰청과 민간협회로 하자는 의견 외에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지금까지 경찰청과 법무부 이외에 새로운 논의 점을 시사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민간보안시장의 현황과 조속한 입법화를 근거로 볼때 18대 국회 이인기 의원(안)과 19대 국회 윤재옥 의원(안)과 같이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현재 국내 민간경비업체에서 음성적으로 민간조사업을 하나의 영역으로 나누어 영업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심부름센터의 청부살인과 의뢰인대한 협박과 금품갈취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그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민간조사

업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듯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에도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수입영역의 축소를 우려하는 이익단체와 주무관청 설정에 대한 정부기관 사이의 대립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간조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약 15년 세월동안 국회에서 수차례 입법발의가 되었고, 최근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한 끊임없는 주장은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민간 조사업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Jo, Sung Gu, Ju Lak Lee. 2011. A Qualitative Research on Establishment of Depar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and Its Future Direction. *Journal of Korea Security Science Assoniation*. 28: 181-205.
- [2] Jo, Sung Gu. 2012.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wareness of The Police Officers of Korea*. Ph. D.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 [3] Jo, Sung Gu, Ju Lak Lee, and Dong Je Kim. 2012. The Cause of an Increasing Number of Private Investigator Agencies and the Subsequent Issues. *Journal of Korea Security Science Assoniation*. 11(3): 247-270.
- [4] Jo, Sung Gu and Dong Je Kim. 2013. The Importance of Private Investigation Education, Status and Direction.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9(8): 67-86.
- [5] Jeong, Il Seok. 2008. *Schemes to Adopt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o Expand the Realm of Private Security*. Ph. D. Dissertation. Yongin University.
- [6] Jang, Seok Heon and Byeong Ho Song. 2008. Analysis on the Issues Introduced in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33: 335-365.
- [7] Kim, Jong Sik. 2011. *Private Investigation(PI), A Study on Policy Measures for Introducing Private Investigator Service*. Lee In Gi Parliamentary Hearings Kit.
- [8] Jeon, Dae Yang. 2006. The Major Issues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Law Stud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8: 33-64.
- [9] Jo, Sung Gu and Tae Min Kim. 2012. A Study on the Establish Dire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The Korea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33: 241-267.
- [10] Kim, Sang Kyun. 2007. A Study on Private Investigator's Job Range and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27: 10-39.

- [11] An, Young Gyu. 2010.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Desirable Private Investigation Law: Focusing on Comparison of Japan's Private Detective Law.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15: 73-107.
- [12] Lee, Ju Lak and Jong Yun Choi. 2012. Establishing the Limits of Private Investigator's Right to Investigate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dividual Privacy. *The Journal of Police Science*. 11(1): 125-146.
- [13] Choi, Jong Yun, Ju Lak Lee, and Se Ung Hwang. 2012. Establishing the Work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11(1): 225-244.
- [14] Kim, Won Jung. 2007. A Review on the Introduction and Work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Journal of Law*. 29: 199-221.
- [15] Jeong, Il Seok, Jun Seok Park, and Se Gwang Oh. 2008. Schemes to Adopt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e Korea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10(4): 272-299.
- [16] Jeong, Il Seok and Ji Young Park. 2009. Sele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Study Supervisors. *Journal of Korea Security Science Assoniation*. 21: 135-154.
- [17] Lee, Sang Won and Yoonb Kyu Park. 200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ivate Investigators System in Korea. *Journal of Korea Security Science Assoniation*. 14: 337-365.
- [18] Yu, Jae Du. 2007. A Study on the Qualification of Private Investigat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9: 211-229.
- [19] Lee, Ju Lak and Song Gu Jo. 2012. The Utilization of Retired Police Officers in the Field of Private Investigation. *Journal of Police Science Institute*. 25(2): 167-288.
- [20] Jo, Heung Sik, Seon Uk Jeong, Jin Suk Kim, and Ji Sung Kwon. 2011.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Hakjisa.

참고문헌 (References in Non-roman Script)

- [1] 조성구, 이주락. 2011.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성장방향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8: 181-205.
- [2] 조성구. 2012. 한국 민간조사업 도입에 관한 경찰관의 인식연구.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박사학위논문.
- [3] 조성구, 이주락, 김동제. 2012. 민간조사업체의 증가 원인과 문제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3): 247-270.

- [4] 조성구, 김동제. 2013. 민간조사 교육의 중요성, 현황과 방향. 한국위기관리논집. 9(8): 67-86.
- [5] 정일석. 2008.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용인대학교 경호학박사학위 논문.
- [6] 장석현, 송병호. 2008.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지. 33: 335-365.
- [7] 김종식. 2011. 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발전방향. 국회의원 이인기 공청회자료 집.
- [8] 전대양. 2006. 민간조사업 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이상배 최재천 안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33-64.
- [9] 조성구, 김태민. 2012.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경찰학회보. 33: 241-267.
- [10] 김상균. 2007.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타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민간조사업법(안)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지. 27: 10-39.
- [11] 안영규. 2010. 민간조사업법 제정 방향에 관한 소고: 일본 탐정업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 73-107.
- [12] 이주락, 최종윤. 2012.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를 위한 민간조사원 조사권의 한계 설정. 한국경찰학연구. 11(1): 125-146.
- [13] 최종윤, 이주락, 황세웅. 2012.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업무범위 설정. 한국경찰연구. 11(1): 225-244.
- [14] 김원중. 2007. 민간조사제도 도입 및 역할에 관한 검토. 법학논집. 29: 199-221.
- [15] 정일석, 박준석, 오세광. 2008.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0(4): 272-299.
- [16] 정일석, 박지영. 2009.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1: 135-154.
- [17] 이상원, 박윤규. 2007.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방향: 시험제도와 교육훈련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337-365.
- [18] 유재두. 2007. 민간조사원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9: 211-229.
- [19] 이주락, 조성구. 2012. 민간조사의 수요증가와 퇴직경찰관 활용방안. 치안정책연구. 25(2): 167-288.
- [20]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2011.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조성구: 경기대학교에서 경호안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호와 민간조사 등이며, 경호학(공저, 2013)의 저서와 주요 논문으로는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연구(2012)”,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성장방향에 대한 질적 연구(2011)”, “민간조사의 수요증가와 퇴직경찰관 활용방안(2011)”, “국내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와 범위(2013)” 등이 있다(skcho@ikw.ac.kr).

박주상: 동국대학교에서 경찰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대구예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찰조직관리, 해양경찰, 경찰복지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범죄수사학(2013)이 있으며, 논문로는

“일선 경찰의 행태 및 근무환경에 대한 참여관찰적 연구 : Lipsky의 일선관료 이론을 중심으로(2013)”,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의 수면장애, 피로, 직무만족 및 삶의 질의 관계(2013)”, “텔파이 분석을 활용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개선방안(2013)” 등이 있다(goodpolice@naver.com).

김동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경호와 무도 등이며, 경호학(공저, 2013), 실천무도학(공저, 2012), 탐정학(공저, 2011) 등의 저서와 주요 논문으로는 “민간조사업의 도입이 국가치안에 미치는 영향(2013)”, “민간조사제도 도입 지연과 그 방향(2013)”, “민간조사 교육의 중요성, 현황과 방향(2013)”, “국내 민간조사 시장의 전문성 증진 방안(2013)” 등이 있다(djkim@ikw.ac.kr).